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Republic of Korea

Phone: +82-70-8799-8326
Fax : +82-70-8799-8339
E-mail: convention@krs.co.kr
Person in charge: Park Yunchan

No : 2020-ETC-07

Date : 15 Sep. 2020

제목 : 파나마 국적선 유해물질목록(IHM) 적합확인서 발행 건

EU 회원국 및 EEA 국가에 기항 또는 묘박하는 파나마국적선박에 대한 EU 선박재활용 규정(Reg. (EU) No 1257/2013, EUSRR)이행과 관련한 기국지침(MMC-386)이 발행되었습니다.

동 지침(MMC-386)에 따라, 모든 파나마 국적선 선주 또는 관리사는 파나마 해사청이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만기 IHM 적합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기국지침의 요약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파나마 국적선주 및 운항관계자께서는 동 사항들을 숙지하시어 적시에 IHM SOC의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파나마 기국지침(MMC-386) 요약

- a. 만기 (Full term) 유해물질목록 적합확인서 (IHM SOC)
 - 만기 IHM SOC는 파나마 정부(파나마해사청, PMA)가 직접발행 함.
선주는 및 운항관계자는 하기 링크를 통하여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증서발행을 신청해야 함: (<https://certificates.amp.gob.pa/certificates/>)
 - “KR이 발행한 IHM 적합확인서 (임시, 5개월)” 또는 “KR이 이미 발급한 IHM 적합확인서(5년 만기)”
 - 유해물질목록 Part 1 (IHM Part 1)
 - 검사보고서
 - 만기 SC 증서 (Full term Cargo Ship Safety Construction Certificate)
 - 안전관리적합증서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SMC)
 - 발행비용 납부 영수증
 - 만기 IHM 적합확인서 발행 비용은 USD 300*임.
 - 기국이 기 발행한 적합확인서의 재발행 또는 변경 또한 USD 300임.
 - 이러한 경우, 신규 신청서를 다음 링크를 통해 기국에 제출하여야 함:
<https://certificates.amp.gob.pa/certificates/>

* 기국 계좌 정보 (비용 납부 시)

BANK NAME: BANK OF AMERICA

BANK ADDRESS: 730 15TH. ST., NW 7TH.FL. WASHINGTON DC. 20005

BANK ABA & SWIFT CODE: 026009593/BOFAUS3N

ACCOUNT NAME: PANAMA MARITIME AUTHORITY

ACCOUNT NUMBER: 226005679320

중요 : 일반적인 신청비용(300 USD)에 추가하여, 국제 송금 수수료 25 USD를 추가 지불하여야 함.

2. 선주/운항관계자 조치사항

2.1 선박이 우리선급으로부터 발급받은 적합확인서(SOC)를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EU 회원국/EEA 국가에 기항 또는 묘박하는 파나마 국적선에 비치되어야 하는 적합확인서는 반드시 파나마 정부로부터 재발행 되어야 합니다.

2.2 만약 우리선급이 이미 발행한 5년 만기 적합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검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국지침(MMC-386)에 언급된 바와 같이, 기국의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국이 발행한 IHM 적합확인서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경우, 앞서 안내해드린 링크를 통해 기국에 Full term 적합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만약 해당 선박이 아직 IHM Part 1 및 적합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IHM Part 1 승인 후, 우리선급 가까운 지부를 통해 5개월 임시 IHM 적합확인서 발행 목적으로 최초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임시 IHM 적합확인서(5개월)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앞서 안내해드린 링크를 통해 기국에 Full term 적합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 적합확인서에 "the ship was satisfactorily inspected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2 of the Regulation (EU) 1257/2013 on ship recycling"문구가 Remark로 기입되어야 함.

파나마 국적선 선주/운항관계자분들께서는 상기의 절차를 숙지하시어 협약의 EUSRR 적용일 전까지 IHM 적합확인서가 적시에 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끝 -

첨부 : MMC-386 - 1부

배부처 : 모든 검사원, 선주, 관련 업계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